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42

발의연월일: 2021. 3. 25.

발 의 자:김예지·서병수·정진석

이종성・김선교・오영환

최승재 · 김희국 · 김성원

홍석준 · 지성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및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 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
	의 창작활동 지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